

2024년 건축·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

※ 적용시기 : 2024. 1. 1. 기초금액 발표분부터

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공사기간	[간접노무비]		[기타경비]		공사규모 (추정가격)	[일반관리비]		[이윤]	[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]				[산업안전보건관리비]									
		(직노) x 율		(재+노) x 율			(재+노+경) x 율			(직접공사비) x 율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					
	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	건축, 산업설비	전문· 전기·통신· 소방·기타		(노+경+일) x 율	종합건설업		전문건설업		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		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
5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2.2	12.2	5.8	5.8	5억 미만	6.0	6.0	15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안전관리비 대상액 ^{*)}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					
	7~12개월 (365일)	12.2	12.2	5.7	5.7					건축공사	0.07	비계·구조물해체공사	0.68		일반건설공사(갑)	2.93							
	13~36개월 (1095일)	12.0	12.0	6.0	6.0															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1.7	11.7	5.8	5.8																		
50억 ~ 3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1.7	11.7	5.8	5.8	5억 - 300억 미만	6.0	5.5	15.0	산업·설비공사	0.16	석공사, 시설물유지관리, 철근콘크리트공사, 가스시설공사(1종)	0.32	5억 미만	일반건설공사(을)	3.09							
	7~12개월 (365일)	11.7	11.7	5.8	5.8													중건설공사	3.43				
	13~36개월 (1095일)	11.5	11.5	6.1	6.1													철도·케도신설공사	2.45	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1.2	11.2	5.9	5.9													특수및기타건설공사	1.85				
300억 ~ 10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1.5	11.5	5.9	5.9	50억 - 1000억 미만	5.5	5.0	12.0	도장공사, 철강재설치공사	0.16		0.10	5억 ~ 50억 미만	일반건설공사(갑)	1.86	5,349						
	7~12개월 (365일)	11.5	11.5	5.8	5.8													일반건설공사(을)	1.99	5,499			
	13~36개월 (1095일)	11.3	11.3	6.1	6.1													중건설공사	2.35	5,400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1.0	11.0	5.9	5.9													철도·케도신설공사	1.57	4,411			
1000억 이상	6개월 이하 (183일)	11.1	11.1	5.6	5.6	300억 - 1000억 미만	5.0	4.5	10.0	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	0.10			50억 이상	일반건설공사(갑)	1.97							
	7~12개월 (365일)	11.1	11.1	5.6	5.6													일반건설공사(을)	2.10				
	13~36개월 (1095일)	10.9	10.9	5.9	5.9													중건설공사	2.44	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0.5	10.5	5.6	5.6													철도·케도신설공사	1.66				
* 기타경비항목: 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, 여비·교통·통신비, 세금과공과, 도서인쇄비 □ 산업설비(건축) 해당공종: 지열공사, 소각시설 등						* 적용제외: 문화재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 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를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						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										
[산재보험료] (노) x 3.56						[환경보전비] (직접공사비) x 율						[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] (직접공사비) x 율						*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도급자관급금액)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					
*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, 노동부 고시 제2023-620호(2023. 12. 22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		구분						공사규모(추정가격)						주) 안전관리비(산업안전보건관리비) 대상액					
[고용보험료] (노) x 율						도로(예시: 교량, 터널, 팔주로 등)						50억 미만						-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,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,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합한 금액					
공사배정규모(추정금액)						플랜트(예시: 발전소, 쓰레기소각장 등)						50억 이상 ~ 100억 미만											
[1등급] 1200억 이상						지하철						100억 이상 ~ 300억 미만											
[2등급] 800억 ~ 1200억 미만						철도						300억 이상 중심·중평제(토목 및 산업설비)											
[3등급] 520억 ~ 800억 미만						상하수도(예시: 폐수, 하수처리장, 정수장 등)						300억 이상 중심·중평제(건축)											
[4등급] 340억 ~ 520억 미만						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로 방지막 설치						터전·대안공사											
[5등급] 210억 ~ 340억 미만						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로 방지막 미설치						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문화재수리공사											
[6등급] 130억 ~ 210억 미만						댐						※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6-921호, 2016.12.19.)											
[7등급] 고시금액 ~ 130억 미만						택지개발																	
7등급 미만						기타 토목(하천 등)																	
*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, 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(2021.7.1.), 고용보험법 시행령						주택(재개발, 재건축)																	
* 총공사금액(도급금액+관급금액)에서 부가세 제외)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						주택(신축)																	
* 등급기준: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(조달청 공고 제2023-235호, 2023.7.6.)						주택 및 건축																	
*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		조경, 기타(전문, 개보수 공사)																	
[건강보험료]						[노인장기요양보험료]						[공사이행보증수수료]											
(직노) x 3.545						(건강보험료) x 12.95						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					수수료					
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						(직노) x 4.5						70억 미만						[직공비x0.0141x]x공기(년)					
*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								70억이상~120억미만						[1백만원+(직공비-75억)x0.0102x]x공기(년)					
[퇴직장제부금비]												120억이상~250억미만						[1.5백만원+(직공비-130억)x0.0077x]x공기(년)					
(직노) x 2.3												250억이상~500억미만						[2.4백만원+(직공비-250억)x0.0063x]x공기(년)					
*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												500억 이상						[4백만원+(직공비-500억)x0.0050x]x공기(년)					
* 국토부 고시 제2015-610호(2015.8.20) 요율 적용																		* "지방계약법 시행령"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- (시행령 제42조 제1항)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- (시행령 제6장) 대형공사계약(대안입찰, 일괄입찰), 특정공사의 계약 - (시행령 제9장)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					
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,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(단,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>을 기준으로 함)																		□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, ()은 2000.7.31.이전 ('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' 제9조) -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.75%(85%)미만인 경우: 87.75%(85%) - 추정가격10억 ~ 50억미만으로 86.75%(83%)미만인 경우: 86.75%(83%) - 추정가격50억 ~ 100억미만으로 85.5%(80%)미만인 경우: 85.5%(80%)					